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330

발의연월일: 2022. 7. 6.

발 의 자:김회재·정일영·전혜숙

신동근 • 이병훈 • 권칠승

김정호 • 윤영덕 • 전재수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고 결정하였는바,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위헌결정 이후 피해 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간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문 등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안 제30조제6항 삭제 및 안 제40조).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 판할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중계장치에"를 "중계장치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② 법원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 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 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에 참여할 때에는 법원에 신문내용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신문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② (생 략)	배려)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를 비
	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의 성
	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u>된다.</u>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u><삭 제></u>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	
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	
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	
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비디오 등 <u>중계장치에</u> 의	제40조(비디오 등 <u>중계장치 등에</u>
한 증인신문) ① (생 략)	의한 증인신문) ① (현행과 같
	<u> </u>

<신 설>

<신 설>

<신 설>

② <u>제1항에</u>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 ② 법원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 항에 따른 증인신문에 참여할 때에는 법원에 신문내용을 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 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 반복되 거나 불필요한 신문을 제한하 여야 한다.
- <u>⑤</u> 제1항 및 제2항에-----